

낙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행정예고 공고

하천법 제4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낙시 금지지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여러분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1년 9월 29일

경 상 남 도 지 사

1. 낙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 이유

낙동강 다기능 보 주변 친수여건 개선으로 생태계 회복과 수질개선이 선행되어야 함에도 낙시 등으로 인한 쓰레기 투기, 소각, 떡밥사용 등 수생태계 저해 우려가 있어 낙시 등의 금지지역으로 지정 고시하여 수질개선 및 친환경적인 생태하천으로 보전하고 안전사고 사전예방을 위함.

2. 주 요 내 용

가. 낙시 등의 금지지역 하천 및 위치

하천명	등 급	위 치	연 장	비고
낙동강	국가하천	함안군 칠북면 봉촌리 ~ 함안군 칠북면 이령리 (우)	2.0km	
		창녕군 길곡면 증산리 ~ 창녕군 길곡면 오호리 (좌)	2.0km	
		창녕군 이방면 등림리 ~ 창녕군 이방면 장천리 (좌)	2.0km	
		합천군 청덕면 삼학리 ~ 합천군 덕곡면 울지리 (우)	2.0km	

나. 낙시 등의 금지기간 및 행위제한

(1) 규제기간(낙시 등의 금지지역 지정기간) : 연중

(2) 행위제한 : 야영·취사 및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낙시행위 등

※ 적용 예외사항 : 학술조사·어종조사 낙시축제 등 부득이한 경우

3. 제한사항 위반자에 대한 처분

- 가. 근 거 : 하천법 제46조 제6호를 위반하여 하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자.
- 나. 벌 칙 : 하천법 제9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300만원이하의 과태료

4. 의 견 제 출

- 가. 제출기간 : 2011. 10. 13일까지
- 나. 제출방법 : 서면, 우편, 전자우편(sgho0316@korea.kr)
- 다. 기재내용 : 주소,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
연락전화번호,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라. 제출기관 : 경상남도지사 생태하천과
 - 1)주 소 :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
 - 2)전 화 : 055-211-4595 (팩스 : 055-211-4559)